일시: 2017.3.13.(월) 16:00 장소: 성북배움터(성북구청 3층)

- 2017년 3월 (제43차) -성북구 인권위원회 회의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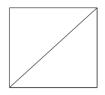
성북구 인권위원회

목 차

1	2017-6호 심의사항	-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인권영향평가 결과	•••••	3
2	보고사항	제42차 인권위원회 개최결과	•••••	28

【공개】

성 북 구 인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7-6호
보 고 연 월 일	2017. 3. 13.(월)

심의사항

-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인 권 영 향 평 가 결 과

보고자 성북구 감사담당관(인권센터)

목 차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 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	15
4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 조례(규칙) 제·개정(안) 내용 벽도 천부 : 붙인자린 참조(벽천)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고, 법률명 및 인용조문 등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 불일치 사항을 해소하고 입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 자의 경우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감면하고자함.
 - (안 제6조제1항제11호)
- 나. 수수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안 제7조제3항)
- 다. 기타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 개정
 - (안 제1조, 안 제6조제1항제2호, 안 제6조제1항제7호, 안 제6조제1항제8호, 별표 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지방자치법」,「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4)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수수료의 감면조항 신설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의 수수료의 감면.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16년 모범납세자가 신청한 과세증명서 발급현황 및 금액
 - 연간 3,766건 3,012천원

4. 작성자

기획경제국 세무1과장 홍 동 석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담당부서)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2017 - 6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	누료 징수 조례	
관련규	······································			
(고시, 훈령, 규정 등)	성, 지침, 협약	지방자치법	LIO LIO	
	관계부서	대상부서	감사담당관	
	협의	협의기간	2017. 2.16.부터 2016. 3. 2.까지(14일간)	
입법일정 (예정)	입법예고	2017. 3. 2.부터 2017. 3. 22.까지(20일간) 매체 : 공보(구보), 기타(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7년 3월(예정)		
	의회상정	2017년 4월(예정)		
첨부자료	필수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		
6 T N II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T T.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세무1과	7급	안영태	2241-4183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Иа
	괴러도함에 기기하는 이스키 이스티케이	1 9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② 아니오	0	
권리 침해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② 아니오	0	
주민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① 예	0	입법예고
참여	있습니까?	② 아니오		의견청취
구제	재·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① 예		
수단	있습니까?	② 아니오	0	
기대	재·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① 예		
효과	효과가 있습니까?	② 아니오	0	

작성요령

-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 조례(규칙) 제·개정(안) 내용 벽도 첩부 : 붙인자란 91 참조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7-6	인선경영기(증증/급급표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점검표 작 성	•	1.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 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회 아니오□
		2.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 는가?	예회 아니오□
 권	리	3.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 책을 수립하였는가?	예Ū 아니오□
_ '	해	4.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요 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회 아니오□
주	민	5.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 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 행하였는가?	예회 아니오□
참 	Й	6.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 가?	예회 아니오□
구 수	제 단	7.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 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 행하였는가?	예회 아니오□
1	민	8.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 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약간의 효과기대□ 해당없음Ѿ
	여	9.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인권침해요소 없음Ѿ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7, 3, 8,)

	(2017. 0. 0.)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검 토 항 목	
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피 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l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
☑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S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필요시	
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	
□ 별도 요청사항 없음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규정을 정 비·보완하여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의 이자율 조정 (안 제33조의2, 제36조, 제36조의 2, 제91조, 제91조의2)
 - 연 3퍼센트~6퍼센트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 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으로 변경
- 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관련 법령 내용 및 지방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 (안 제38조 제1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
 - "2003년 12월 31일" ⇒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
- 다. 감정평가 의뢰 시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 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3조, 제94조)
- 라.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 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안 제4조, 제5조, 제21조, 제27조, 제30조, 제32 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70조, 제92조, 제95조, 별표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34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1조의3, 제27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5조, 제49조, 제78조, 제81조, 제82 조 및 제84조
- 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 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규정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발생 없음
- 4. 작성자

재무과장 최상균

다. 협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 조례(규칙) 제·개정(안) 내용 벽도 천부 : 붙인자 f 95 참조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담당부서)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2017 - 7		인권	영향평가 기초자료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관련규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동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관계부서	대상부서	기획예산과	
	협 의	협의기간	2017. 1.23부터 2017. 1.25.까지	
입법일정 (예정)	입법예고	2017. 3. 2 ~ 2017. 3.22 (20일간 예정) 매체 : 구보(✔), 기타(성북구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2017. 4. 중		
	의회상정	2017. 4. 중		
첨부자료	필수자료	조례안(신·구 조문 비교표 포함)		
선구자료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재무과	행정6급	이정희	2241-4003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Иа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 습 니까?	① 예		
		② 아니오	0	
권리 침해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② 아니오	0	
주민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1 9	0	
참여		② 아니오		
구제	재·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① 예	0	
수단	있습니까?	② 아니오		
기대 효과	재·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① 예		
	효과가 있습니까?	② 아니오	0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7-7	CC0007(00)000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서	1.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ඛ 아니오□
점검표 작 성	2.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 는가?	
 권 리	3.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 책을 수립하였는가?	
근 더 침 해 	4.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요 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주 민 참 여	5.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6.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직 아니오□
구 제 수 단	7.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 하였는가?	
주 민 참 여	8.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약간의 효과기대□ 해당없음☑
	9.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인권침해요소 없음↓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7. 3. 8.)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검 토 항 목
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 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필요시 별지사용)
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
□ 별도 요청사항 없음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 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아동의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진로체험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발급하는 아동 동행카드의 발급 대상·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이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카드" 발급 대상자 및 시기(안 제4조 및 제5조)
 - 발급 대상자 :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유학기제 대상 중학교 1학년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아동의 경우 만 13세의 청소년
 - 발급 시기 : 중학교 1학년 입학한 날 또는 만 13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3월 2일 이후
- 나. "카드" 지원한도(안 제7조)
 - 반기당 5만원씩 연간 10만원 지원
- 다. "카드"의 신청(안 제8조)
 -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청 기한 : 발급 해당연도의 11월 15일 까지
- 라. "카드"의 사용(안 제9조)
 - 사용 장소 : 구청장이 지정하는 성북구 관내·외 감성, 정서, 창의적 역

량개발 체험 활동이 가능한 곳

- 사용 기한 : 발급한 연도의 12월 15일까지

마. 업무의 위탁(안 제11조)

- 필요한 경우 아동 동행카드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 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 아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 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

아동 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 아동 동행카드 지원액 397,500천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1학년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아동의 경우 만 13세)에게 연 10만원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	-	_	1	_
세념	소계(a)	-	-	-	_	-	-
세출	○ 동행카드 지원	397,500	388,400	399,600	447,000	487,400	2,119,900
개월 	소계(b)	397,500	388,400	399,600	447,000	487,400	2,119,900
□총 비용(a-b) -		-397,500	-388,400	-399,600	-447,000	-487,400	-2,119,9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397,500	388,400	399,600	447,000	487,400	2,119,900
구비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397,500	388,400	399,600	447,000	487,400	2,119,900

- 구비 100% 충당

5. 덧붙이는 의견 : 매년 인구변동으로 인해 비용추계 변동 가능

6. 작성자 :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다. 협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	성북구 아동 동행카드 지원 조례		
관련구	구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관계부서 협	대상부서		
	의	협의기간		
입법일정 (예정)	입법예고	2017. 3. 2 ~ 2017. 3. 22(20일간) 매체 : 공보(구보), 기타(구 홈페이지)		
	조례·규칙심 의 회	2017. 4월		
	의회상정	2017. 4월		
첨부자료	필수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 동행카드 지원 조례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작성자	교육이동청소년담당관	행정8급	김정호	2241-2483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Иа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에		
	한민도용에 한다님에 표도가 있습니까?	② 아니오	0	
권리 침해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② 아니오	0	
주민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① 예	0	입법예고기간
참여	있습니까?	② 아니오		중 의견제출
구제	재·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① 예	0	
수단	있습니까?	② 아니오		
기대	재·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① 예	0	
효과	효과가 있습니까?	② 아니오		

작성요령

-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 조례(규칙) 제·개정(안) 내용 벽도 천부 : 붙인자린 910 참조

※관리번호 2017-8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 동행카드 지원 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	1.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 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회 아니오□
	점검표 작 성	2.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 는가?	예ඛ 아니오□
 권	리	3.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 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아니오회
침 해	해	4.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요 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ඛ 아니오□
주		5.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 였는가?	예회 아니오□
참 여	Й	6.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회 아니오□
구수	제 단	7.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 하였는가?	예회 아니오□
주 민 참 여	8.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 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약간의 효과기대☑ 해당없음□	
	9.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 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인권침해요소 없음□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7, 3, 8,)

(2017: 0. 0.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 동행카드 지원 조례
검 토 항 목
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 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필요시 별지사용)
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
□ 제4조 발급대상자 : 주민등록 기준일 경우 미등록 이주 아동은 카드 사용에 제 외될 가능성이 있음. 성북구 인권증진기본조례 제2조 주민의 정의에 따르면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함.

④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안이유

성북구,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북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마을-학교 협력사업,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교육관련 지역특화사업 등 혁신교육 사업계획의 범위 (안 제3조)
- 나.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한 성북구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다. 혁신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라. 혁신교육지구사업 정책 제안 등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규정 (안 제6조)
- 마. 혁신교육지구사업 계획 수립 등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규정 (안 제8조)
- 바. 혁신교육지구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지방자치법」,「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4)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 조례·규칙 제·개정용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2017 - 9		인건강앙경기 기소자표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	성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구	구정	
(고시, 훈령, 규정,	지침, 협약 등)	
	관계부서 협	대상부서
	의	협의기간
입법일정 (예정)	입법예고	2017. 3. 2 ~ 2017. 3. 22(20일간) 매체 : 공보(구보), 기타(구 홈페이지)
	조례·규칙심 의 회	2017. 4월
	의회상정	2017. 4월
첨부자료	필수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타자료	
※ 검 토	결 과	

작 성 자	부서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아동청소년 담당관	행정7급	하 강 식	2241-2402

^{「※」}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인권영향 점검표(1) 조례·규칙 제·개정용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Иа
	괴러도하에 크리카를 으스키 이스터까?	① 에		
	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② 아니오	0	
권리 침해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② 아니오	0	
주민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0	입법예고기간
참여		② 아니오		중 의견제출
구제	재·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0	
수단		② 아니오		
기대	재·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0	
효과		② 아니오		

작성요령

-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 조례(규칙) 제·개정(안) 내용 벽도 천부 : 붙인자리 919 참조

※관리번호	인권영향평가(공통)점검표
2017 - 9	<u>геобол(облаан</u>
조례·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부		1.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 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회 아니오□	
점검 작		2.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 는가?		
권 리 침 해	리	3.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 책을 수립하였는가?	예Ū 아니오□	
	-	4.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요 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회 아니오□	
'	민	5.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 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 행하였는가?	예회 아니오□	
	Ø [6.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 가?		
구 수	제 단	7.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 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 행하였는가?	예회 아니오□	
주 참	민 여	8.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 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약간의 효과기대☑ 해당없음□	
		9.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 인권침해요소 없음Ѿ	

인권영향평가(조례 및 규칙 제·개정용)점검표

(2017. 3. 8.)

(2017: 0. 0.
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 토 항 목
1.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 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
□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필요시 별지사용)
2.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
□ 별도 요청사항 없음

보고사항

제42차 인권위원회 개최결과

1. 개최개요

- □ 일 시: 2017. 2. 8.(수) 16:00~18:10
- □ 장 소: 성북배움터 (구청3층)
- □ 참 석 자: 14명(김경옥, 김수정, 김지희, 박다혜, 손민호, 유의선, 윤성봉,

윤정섭, 이강훈, 이경환, 이미영, 이진수, 이철, 전문수)

- □ 주요안건
 - 조례·규칙 제·개정안 인권영향평가 심의(3건)
 - O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2. 회의결과

- □ 인권영향평가 심의 및 결정사항
 - 조례·규칙 제·개정안 인권영향평가 결과 심의
 -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권고결정
 -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원안동의
 -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권고결정
- □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
 - O 16-진가-003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의한 장애인 차별』권고
 - O 제11기 주민인권학교 운영계획
 - O 수화통역센터 관련 보고

3.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부서의견

권	卫	인권위원회가 의결하여 권고문을 구청장에게 송부
원안	동의	인권과 관련 없는 사안
수정동의		인권센터 의견에 동의하여 권고하지 않음
조	정	해당부서가 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수정사항에 대해
		수용하기로 조정하면 별도의 권고를 하지 않음

(부서명 : 문화체육과)

3-1)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심의대상	심의 결과	위원회 의견	수용 여부	부서의견	비고
성북구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인영에 관한 조례	권고 결정	○ '이 조례의 제2조 기능에서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의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제3조4항 위원회의 구성에는 명시되지 않아 논리적으로 불합리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우려됨으로 제3조4항 위원의 구성에 '장애인 체육 관계자'를 포함시킴	수용	○ 체육진흥협의회는 지역	
		○ 대한민국 헌법 제 11 조 제1항, 양성평등기본 법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역시 성평등의 원칙에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3조 5항을 신설하여 '위원의 구성은특정성별이 2/3를 넘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둔다.	미수용	체육발전을 위하여 힘쓰 시는 분들로 구성하려고 하나, 체육이라는 분야의 특성상 관심있는 여성분 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가	

3-2)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심의대상	심의 결과	위원회 의견	수 용 여부	부서의견	비고
성북구 근로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권 결 정	○ 제5조의 이용자격을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성북구 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 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성당에서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정 할것 ○ 제 6조의 근로복지시 설의 이용제한은 '서울 특별시 성북구청장은 근 로복지시설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을 병령 등 기 위하여 퇴소 명령 등 기 위하여 되소 명령 등 기 위하여 되소 명령 등 이용제한의 등 기 위하여 되소 명령 등 이용제한의 등 기 위하여 기 위하여 등 기 위하여 등 기 위하여 등 기 위하여 기 있다. 퇴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시 설의 가장에서 정한 다 양의 구정에서 정한 다 양의 구정에서 정한 다 양의 건물수정할 것	일부 수용 6조 수용	○ 제5조의 이용자격을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성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 관내 사업장 에 취업하고 있으면서 임 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 공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함 ○ 제 6조의 근로복지시설 의 이용제한은 '서울특별 시 성북구청장은 근로복지 시설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퇴소 명령 등 필요한 이용 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 다. 퇴소 명령 등 이용제 한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 지시설 운영 규정에서 정 한다'로 수정함.	